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83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이종배·김승수·송석준
김미애·구자근·윤재옥
김기웅·권영진·권영세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